

별첨 : 1

일련번호 : CNCA-N-008:201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체계 인증 실시 규칙

2011-12-31 발표

2012-05-01 실시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발표

목차

1. 목적, 범위 및 책임
2. 인증기관 요구사항
3. 인증 직원 요구사항
4. 인증 근거와 인증 범위
5. 인증 절차
6. 인증서
7. 정보 보고
8. 인증 수수료

첨부 : HACCP 체계 인증 현장 심사 최소 시간표

1. 목적, 범위 및 책임

1.1 식품 업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체계 인증(이하 'HACCP 체계 인증') 업무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1.2 본 규칙은 HACCP 체계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 HACCP 체계 인증을 실시하는 절차와 관리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증기관이 HACCP 체계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근거이다.

1.3 본 규칙은 특별 HACCP 체계 인증 실시 규칙이 없는 HACCP 체계 인증에 적용된다. 특별 규칙이 있는 HACCP 체계 인증은 해당 인증 실시 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HACCP 체계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관과 인증 직원은 본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칙의 규정 준수가 부담할 법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인증기관 요구사항

2.1 HACCP 체계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가 규정한 기본 조건 및 HACCP 체계 인증에 종사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중국 국가 인증 인가 감독 관리국(CNCA)(이하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인증기관은 국가인감위 승인을 획득한 후 12개월 이내에 HACCP 체계 인증 활동의 실시가 본 규칙, GB/T 27021 「적격 평가 관리 체계 심사 인증기관의 요구사항」, GB/T 22003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심사와 인증기관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건을 국가인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관련 증명서취득 전까지는 해당 인증 범위 내의 인증서를 10장 이하로만 발급할 수 있다.

2.3 인증기관은 적용되는 중국 및 수입국(지역) 관련 법률, 법규, 표준과 규범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특별 심사 지도서를 제정하여야 한다.

3. 인증 직원 요구사항

3.1 인증기관에서 인증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은 필요한 개인적 자질과 인증에 필요한 관련 전공 및 인증 검사, 검증 등 방면의 교육, 훈련과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2 인증 심사자는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HACCP 체계 인증 활동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고, 교육 경력, 업무 경력과 심사 경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인증 및 인증 훈련, 자문 직원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인증 인가 협회의 집업 자격 등록을 취득하여야 한다.

3.3 인증기관은 해당 유형별 제품의 HACCP 체계 인증 활동을 실시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기관의 인증 심사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4. 인증 근거와 인증 범위

HACCP 체계 인증의 인증근거와 인증범위는 국가인감위가 제정하여 발표한다.

5. 인증 절차

5.1 인증 신청

5.1.1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 공상 행정 관리 부문 혹은 관련 기관에 등록 등기한 법인 자격(혹은 그 구성 부분)을 취득한 자
- (2)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 허가 문건(해당 시)을 취득한 자
- (3) 생산 경영한 제품이 해당 중국과 수입국(지역)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규범에 부합한 자
- (4) 본 규칙에서 규정한 인증 근거에 따라 문건화된 HACCP 체계를 수립 및 실시하고 체계를 3개월 이상 효과적으로 운영한 자
- (5) 1년 내, 중국과 수입국(지역)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식품 안전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
- (6) 5년 내, 본 규칙 6.2.2(4), (5) 조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서가 취소되지 않은 자

5.1.2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문건과 자료

- (1) 인정 신청서
- (2) 법적 지위 증명서 복사본
- (3)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 허가 문건과 신고 등록 증명서 복사본(해당 시)
- (4) 조직 기구 코드 증서 복사본
- (5) HACCP 매뉴얼(우수 생산 규범(GMP) 포함)
- (6) 조직도와 직책 설명
- (7) 공장 위치도, 평면도, 가공 공장 평면도, 제품 설명, 공정 흐름도, 공정 설명, 위해 분석서, HACCP 계획표, 가공 생산라인, HACCP 항목 및 교대 실시에 관한 설명
- (8) 사용된 첨가제 명칭과 용량, 적용 제품 및 제한 기준 등 식품 첨가제 사용 상황에 관한 설명
- (9) 생산, 가공 혹은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되는 중국과 수입국(지역) 관련 법률, 법규, 표준과 규범 목록을 준수하고, 제품에 기업 표준을 집행한 경우 현지 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 부문 신고 등록 도장이 날인된 제품 표준 문건 복사본을 제공한다.
- (10) 생산, 가공 주요 장비 리스트 및 검사 장비 리스트
- (11) 여러 장소 리스트 및 위탁 가공 상황에 관한 설명(해당 시)
- (12) 제품이 위생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관련 증서, 해당 시에는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이 발급한 식품에 접촉한 물, 얼음, 가스가 위생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 (13) 관련 법률, 법규, 인증기관 요구사항 준수 서약서와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성명서
- (14) 기타 필요 문건

5.2 인증 접수

5.2.1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1) 인증 범위
- (2) 인증 업무 절차
- (3) 인증 근거
- (4) 인증서 유효 기간
- (5) 인증 수수료 기준

5.2.2 신청 심사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 서류를 완비한 후,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10일 (근무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 서류와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1) 인증 요구사항규정이 명확하고 문건화하였으며 이해를 하였는가
- (2) 인증기관과 신청자 간 이해의 차이가 해결되었는가
- (3) 신청한 인증 범위, 신청자의 작업장, 특수 요구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

5.2.3 심사 평가 결과 처리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인증 신청을 수리한다.

신청 심사 미통과 시, 인증 신청자에게 규정 시간 내에 보충, 보완하도록 서면 통지하고 인증 신청 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3 심사 기획

인증기관은 피심사자 규모, 생산 과정, 제품 안전 위험 정도 등 요인에 따라 인증 심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심사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5.3.1 심사팀 구성

심사팀은 피심사자의 해당 전문 유형 HACCP 체계 인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초 심사팀은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해당 업계 유형별 심사원이 최소 1명 이상 요구된다. 1, 2단계 심사팀 팀장은 동일인이며 2단계 심사팀에 1단계 심사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심사원이 동일한 생산 현장을 심사할 때 심사팀 팀장을 연속 2회 담당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생산 현장에 대한 인증 심사를 연속 3회 실시할 수 없다.

5.3.2 심사는 반드시 현장 심사 전에 피심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피심사자에게 심사팀의 모든 구성원 성명을 고지한다. 피심사자가 심사팀 구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팀을 조정해야 한다.

5.3.3 심사팀장은 심사 계획을 작성하고 현장 심사 활동 시작 전, 심사 계획

은 심사 위탁자의 확인과 접수를 거쳐 피심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3.4 현장 심사는 제품의 생산 주기를 포괄하는 심사 범위를 안배하고, 심사팀이 현장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

5.3.5 피심사의 체계를 여러 장소에 적용할 경우에는 심사의 유효성을 확보 하도록 인증기관이 모든 생산 장소에 대해 현장 심사하여야 한다. 피심사자가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산 과정을 위탁 가공 등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피위탁 가공 조직의 피위탁 가공 활동이 해당 HACCP 체계 인증을 이미 획득하였거나 혹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위탁 가공 과정에 대해서도 현장 심사하여야 한다.

5.3.6 심사 시간

인증기관은 심사 시간을 확정하는 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피심사자 규모, 심사 범위, 생산 과정, HACCP 항목과 제품 안전 위험 정도 등 요인에 따라 심사 시간을 기획하여 심사의 충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심사 시간은 본 규칙에 부표의 요구사항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5.4 심사 실시

5.4.1 최초 인증 심사

HACCP 체계 인증 최초 인증 심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두 단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단계와 2단계 심사 모두 피심사자의 생산 혹은 가공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5.4.1.1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 목적은 신청자가 이미 인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2단계 심사를 확정하는 핵심을 조사하는데 있다. 1단계 심사에 하기 내용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 (1) 피심사자의 HACCP 체계 범위, 과정, 장소 필수 정보 및 관련 법률, 법규, 표준 요구사항과 준수 상황을 수집한다.
- (2) 위탁 가공 등 생산 활동이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식별한다.
- (3) 피심사자 작업 환경, 작업장 및 시설, 장비, 직원, 위생 관리 등이 해당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GMP)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초보적

으로 평가한다.

(4) 인증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피심사자의 이해 여부와 피심사자 HACCP 체계 문건을 심사한다. 피심사자 체계 문건의 부합성, 적절성, 충분성을 중점 평가하고 특히 중요 관리점(CCP), 중요 한계 기준 확정 및 그 지속성 근거를 심사한다.

(5) 피심사자의 HACCP 시스템과 현장 운영을 충분히 파악하고 피심사자의 운영 장소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및 체계의 실시 상황을 평가하여 피심사자가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피심사자와 2단계 심사의 세부 절차를 논의하여 심사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 심사 기획을 위한 핵심을 제시한다.

피심사자에게 1단계 심사 결과로 인해 2단계 심사가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4.1.2 2단계 심사

2단계 심사의 목적은 피심사자 HACCP 체계 실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2단계 심사는 인증 심사 조건이 갖추어진 후 진행하여야 하며 2단계 심사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심사 결과의 문제점은 2단계 심사 전까지 해결되어야 한다.

2단계 심사는 하기 내용에 주목하여야 하되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 (1) 중국과 수입국(지역) 적용 법률, 법규 및 표준과의 부합성 및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안전 위생 요구사항과의 부합성(해당 시)
- (2) HACCP 체계 계획, 전제 계획 및 보호 계획의 실시와 제품 안전 위해 통제 능력 등 HACCP 체계 실시의 유효성
- (3) 원부재료 및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의 식품 안전 위해 식별의 충분성과 통제의 유효성
- (4) 생산 가공 과정 중 위생 관리 기준(SSOP) 집행의 유효성
- (5) 생산 과정 중 식품 안전 위해 통제에 대한 유효성
- (6) 제품 소급 가능성 체계 구축 및 부적합 제품 통제
- (7) 식품 안전 검증 활동 배치의 유효성 및 식품 안전 상황
- (8) 불만 신고에 대한 피심사자의 처리

1단계에서 이미 심사한 HACCP 체계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유효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2단계에서 재심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증 기관이 이미 심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인증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단계 심사에서 발견된 내용이 2단계 심사 보고에 포함되며 1단계 심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부합성을 분명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심사 기록에 HACCP 계획 중 CCP 기술 매개변수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 심사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하면 1단계 심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5.4.2 심사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인증기관이 서면으로 부적합 보고서를 발급하고, 피심사자에게 규정 기한 내에 원인 분석, 부적합 사항 제거를 위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혹은 계획 중인 구체적인 시정 및 시정 조치, 명확한 검증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인증기관은 피심사자가 제출한 시정 및 시정 조치를 확인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피심사자는 3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3 심사팀은 1단계와 2단계 심사 중 수집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여 심사 결과를 평가하고 심사 결론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5.4.4 심사팀은 매회 심사 시 심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증기관이 피심사자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4.5 제품 안전성 검증

위해 분석의 입력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위해 수준이 확정된 수용 가능 수준 이내이며, HACCP 계획과 전제 계획이 실시되고 유효하며, 특히, 제품 안전 상황 등 상황은 현장 심사 혹은 관련 과정에서 인증 신청 제품을 샘플링 검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중국과 수입국(지역) 관련 지침, 표준, 규범 혹은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기획하고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을 확정하여야 한다. 샘플링 검사는 하기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기관은 GB/T 27025 조건에 부합하며 해당 능력을 갖춘 검사 기구에 위탁하거나 혹은

(2) 현장 심사자가 신청자의 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거나 혹은

(3) 현장 심사자가 기타 검사 기구가 발급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완료한다.

신청자의 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검사 시설에 대한 통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검사 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할 때, 검사 결과를 발급한 검사 기관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검사 및 교정 실험실 능력에 관한 범용 조건」(GB/T 27025)에 따라 실험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하기 해당 통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검사 결과 시효성에 관한 합리적인 한계 확정
- (2) 검사 결과 중 검사 항목이 불완전할 경우의 처리 방식

5.5 인증 결정

5.5.1 종합 평가

인증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특히 제품의 실제 안전 상황과 기업 성실과 신용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하고 인증을 결정한다. 심사팀 구성원은 인증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한 피심사자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피심사자에 대하여 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고지하여야 한다.

5.5.2 인증 결정에 대한 제소

피심사자가 인증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0일(근무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소한다. 인증기관은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사자가 인증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감위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5.6 추적 감독

인증기관은 법에 따라 인증서 획득 조직에 대하여 감독 심사, 추적 조사 등을 포함하여 추적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5.6.1 감독 심사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 조직 및 시스템에 따라 제품의 위험을 포함하고, 감독 심사 시간 간격 혹은 횟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혹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기관이 감독 심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

감독 심사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최초 인증 후 1차 감독 심

사는 2단계 심사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한다. 매회 감독 심사마다 가능한 한 HACCP 체계 인증 범위 내의 모든 제품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품 생산의 계절성 원인 등으로 인하여 매회 감독 심사 시에 모든 제품을 감독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 유효 기간 내 감독 심사는 반드시 HACCP 체계 인증 범위 내에 포함된 모든 제품을 감독 심사하여야 한다.

5.6.1.1 감독 심사에 하기 내용이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1) 시스템 변화와 유지 상황
- (2) 중요 원부재료 공급자 및 위탁 가공의 변화 상황
- (3) 제품 안전성 상황
- (4)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GMP), 위생 관리 기준(SSOP), 중요 관리점(CCP), 중요 한계 기준 유지와 변화 상황 및 유효성
- (5) 고객 불만 신고 및 처리
- (6) 변경된 인증 범위
- (7) 전회 심사에서 확정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 (8) 중국과 수입국(지역) 관련 법률 법규 표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상황
- (9) 품질 감독 혹은 업계 주관 부처 샘플링 검사 결과
- (10) 인증서 사용

5.6.1.2 필요 시 감독 심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 조건은 5.4.5를 참조한다.

5.6.1.3 감독 심사 결과 평가

인증기관은 감독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인증서 획득 조직의 인증 자격 유지, 일시 정지, 취소를 결정한다.

5.6.2 추적 조사

5.6.2.1 추적 조사 방식

인증기관은 위험 분석을 기초로 통지 없이 현장 심사, 생산 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시장 샘플링 검사, 설문 조사 등 방식을 통해 인증 획득 조직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매년 추적 조사 조직의 비율은 총 인증 획득 조직 수의 5%이상이어야 한다. 인증 획득 조직의 수가 100미만인 경우, 추적 조사 수

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5.6.2.2 비통지 현장 심사

비통지 현장 심사 시, 심사 48시간 전 인증 획득 조직에 심사 계획을 알릴 수 있으며 인증 획득 조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다. 최초 심사 불수리 시 서면 경고를 받으며 2차 서면 불수리 시 인증이 일시 정지된다.

5.6.2.3 추적 조사 실시 및 결과 처리

인증기관은 추적 조사 활동 절차, 실시 요구사항 및 추적 조사 결과 처리 방법을 제정한다. 추적 조사 결과, 인증 획득 조직이 더 이상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면 인증서를 일시 정지 혹은 취소하여야 한다.

5.6.3 정보 통보 제도

인증 획득 조직 HACCP 체계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인증 획득 조직과 정보 통보 제도를 수립하여 하기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적 지위, 경영 상황, 조직 상황 혹은 소유권 변경 정보
- (2) 조직과 경영진(예: 주요 관리, 정책 결정 혹은 기술자 등) 변경 정보
- (3) 연락할 주소와 장소 변경 정보
- (4) HACCP 체계와 과정의 중대한 변경 정보, 제품 공정 환경 변화 정보
- (5) 관련 식품안전사고 정보, 소비자 불만 신고 정보
- (6) 소재 구역 내에서 발생한 관련 중대 동·식품 전염병 정보
- (7) 정부 당국 조사 혹은 정부 부처 조직의 시장 샘플링 조사 중 발견된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정보 혹은 수출 제품이 안전 위생 방면의 문제로 인해 수입국(지역) 주관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
- (8) 불합격 제품 리콜 및 처리 정보
- (9) 기타 중요한 정보

5.6.4 정보 분석

인증기관은 상기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감독 심사 횟수 추가, 인증 자격 일시 정지 혹은 취소 등과 같은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5.7 재인증

인증서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 인증 획득 조직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절차와 최초 인증 절차는 동일하나 1단계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체계 혹은 운영 환경(예: 구역, 법률 및 법규, 식품 안전 표준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평가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인증 시 1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은 재인증 심사 결과 및 인증 주기 내 체계 평가 결과와 인증 사용자의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재인증을 결정한다.

5.8 인증 범위 변경

5.8.1 인증 획득 조직이 인증 범위 변경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8.2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 조직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고 적절한 심사 활동을 기획 및 실시하며 5.5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결정한다. 이 심사 활동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 획득 조직의 감독 심사 혹은 재인증과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5.8.3 인증 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사 중 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5.9 인증 조건 변경

인증 요구사항 변경 시, 인증기관이 인증에 요구된 변화를 정보 공개 방식으로 인증 획득 조직에 고지하고 인증 요구사항 변경의 전환 배치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인증 획득 조직에 대해 변경 후 인증 요구사항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인증 조건 변경 후 인증 획득 조직의 인증 유효성을 확인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인증서

6.1 인증서 유효 기간

HACCP 체계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부

합하여야 한다. 인증서에 하기 기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단, 이에 국한하지는 않음).

- (1) 인증서 일련번호
- (2) 조직 명칭, 주소
- (3) 인증서 적용 범위 (제품 생산 장소, 생산 작업장 등 정보 포함)
- (4) 인증 근거
- (5) 인증서 발급 일자, 유효 기간
- (6) 인증기관 명칭과 주소

인증서 일련번호는 「중국 식품 농산품 인증 정보 시스템」에서 획득하며,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증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6.2 인증서 관리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 조직의 인증서 사용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2.1 인증서 일시 정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이 인증서 사용을 일시 정지한다. 일시 정지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 (1) 인증 획득 조직이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 인증 획득 조직이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인증 획득 조직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품질 감독 혹은 업계 주관 부처의 샘플링 부적합 등 상황이 있고, 아직 인증서를 즉시 철회할 필요가 없는 경우
- (4) 인증 획득 조직 HACCP 체계 혹은 관련 제품이 인증 근거, 해당 제품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증서를 즉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 (5) 인증 획득 조직이 규정 간격으로 감독 심사할 수 없는 경우
- (6) 인증 획득 조직이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7) 인증 획득 조직과 인증기관이 모두 인증 자격 일시 정지에 동의한 경우

6.2.2 인증서 취소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취소한다.

- (1) 인증 획득 조직 HACCP 체계 혹은 해당 제품이 인증 근거 혹은 제품 표준에 부적합하여 인증서 즉시 취소가 필요한 경우
- (2) 인증서 일시 정지 기간에 인증 획득 조직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인증 획득 조직이 인증 획득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 (4) 인증 획득 조직에 심각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관계자의 신고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5) 인증 획득 조직이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한 경우
- (6) 인증 획득 조직이 해당 관리 감독 부처 혹은 인증기관의 감독을 거부한 경우

7. 정보 보고

인증기관은 요구사항에 따라 하기 정보를 해당 정부 감독 관리 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1) 인증기관은 현장 심사 진행 시 5일(근무일) 전에 심사 계획 등 정보를 「중국 식품 농산품 인증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10일(근무일) 이내에 인증서가 취소 혹은 일시 정지된 조직의 명단과 원인을 국가인감위와 해당 조직 소재지의 성(省)급 품질 감독, 검사 검역, 공상 행정 관리 부처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 (3)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 조직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정보를 획득한 후 해당 정보를 국가인감위와 인증 획득 조직 소재지의 성(省)급 품질 감독, 검사 검역, 공상 행정 관리 부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4) 인증기관은 요구에 따라 즉시 「국가 식품 농산품 인증 정보 시스템」에 인증 활동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HACCP 체계 인증 업무 보고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발급한 인증 수량, 인증 획득 조직의 품질 분석, 인증서 일시 정지와 취소 목록 및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다.

8. 인증 수수료

국가 가격 주관 부처가 규정한 품질 체계 인증 수수료 관리 방법과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첨부 표

HACCP 체계 인증 현장 심사 최소 시간표

직원 수	최초 인증 현장 심사자 일수	감독 심사 현장 심사자 일수
50인 이하	3	2
50-100인	4	2
100-200인	5	3
200인 이상	6	4

주: 상기 표는 1개의 생산 장소를 대상으로 지정한 HACCP 체계 심사자의
심사 일수이다.